

2018년도 4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19. 2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□ 보고대상

- 기 간 : 2018. 10. 1. ~ 12. 31.(2018년 4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원순씨 핫라인) 및 오프라인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□ 접수결과

- 2018년 4분기 총 260건 접수

[표 1] 2018년 4분기 창구별 월별 접수현황 (단위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10월	11월	12월
공 익 신 고	54	28	12	14
공직자비리신고	205	59	52	94
부 정 청 탁	1	-	1	-
퇴직공무원특혜	-	-	-	-
합 계	260	87	65	108

※ 전 분기(2018년 3분기) 접수 건수 154건에 비해 69% 증가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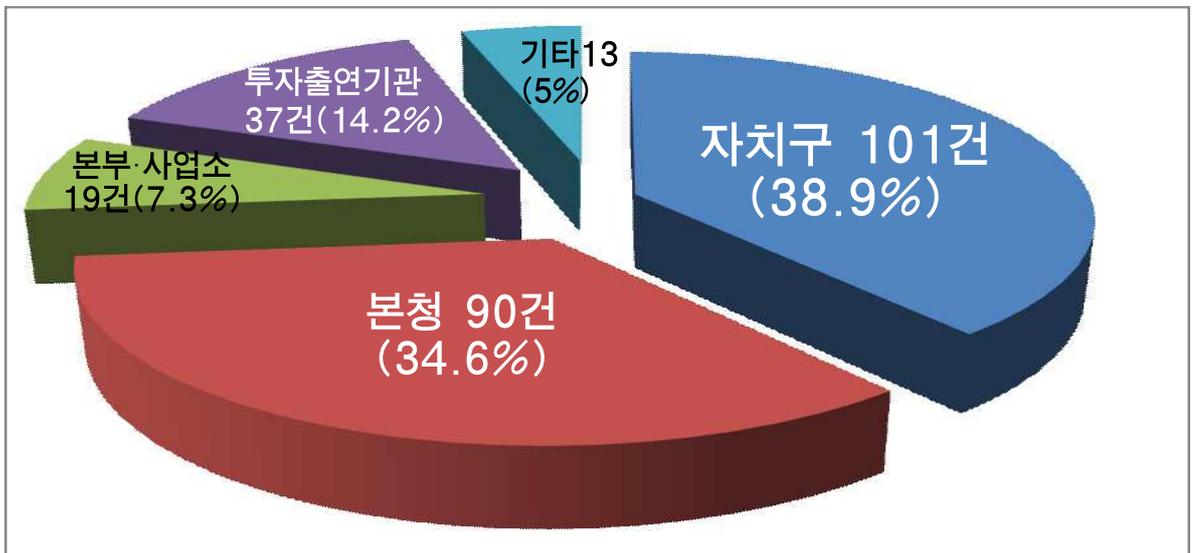
(단위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응답소/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260 (100%)	225 (86.5%)	20 (7.7%)	15 (5.8%)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101건(38.9%)으로 가장 많았음
 - 사회복지사업법/국토계획법/건축법 등 공익신고 17건
 - 복무, 업무부적정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84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90건(34.6%), 본부/사업소 소관 19건(7.3%)
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6건, 공직자비리신고 84건 등 접수
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4건, 공직자비리신고 15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37건(14.2%), 기타 13건(5%)
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3건, 공직자비리신고 34건
 - 기타 13건은 경찰, 중앙부처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타 기관 해당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260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84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(단위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184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260 (100%)	166 (63.9%)	18 (6.9%)	76 (29.2%)

* 청원/제안/건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,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‘공익제보’ 해당 신고 범위

구분	개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<p>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284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</p>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도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4. 제보내용 유형 분석

□ 제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166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금 품 수 수	본 부 · 사 업 소	1	금품제공 요구 등
	소 계	1	
복 무	본 청	3	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/근태 등 공무원 복무관련
	본 부 · 사 업 소	2	
	자 치 구	5	
	투 자 출 연 기 관	2	
	소 계	12	
불 공 정 계 약	본 청	1	입찰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등
	본 부 · 사 업 소	3	
	투 자 출 연 기 관	4	
	소 계	8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23	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로 발생한 사건 (업무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 부 · 사 업 소	7	
	자 치 구	30	
	투 자 출 연 기 관	11	
	기 타	2	
	소 계	73	
인 사	본 청	2	채용, 승진, 근무평정 등 기관의 부적정 인사 관련
	본 부 · 사 업 소	1	
	자 치 구	4	
	투 자 출 연 기 관	14	
	소 계	21	
품 위 손 상	본 청	45	공무원 등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미준수 행위 등
	본 부 · 사 업 소	1	
	자 치 구	4	
	투 자 출 연 기 관	1	
	소 계	51	
총 계		166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18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건 축 법	2	자 치 구	해당없음 ²	미신고·허가 불법 건축물 등
국민건강보험법	1	자 치 구	개선 ¹	진료비 부당 청구
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	1	자 치 구	조치 ¹	수목 무단 훼손
도 로 교 통 법	2	자 치 구	해당없음 ²	도로점용허가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요청
사회복지사업법	2	자 치 구	해당없음 ¹ , 조사중 ¹	직원의 초근수당 부당수령, 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매각
영 유 아 보 육 법	2	자 치 구	해당없음 ²	어린이집 관리부실 제보
의 료 법	3	자 치 구	조치 ¹ , 개선 ²	부정의약품 사용 및 병의원 과대광고
전 기 공 사 업 법	1	본 청	조사중 ¹	자격증 대여 허위경력으로 감리용역 참여
공 동 주 택 법	4	자 치 구	해당없음 ¹ , 개선 ¹ , 증거불충분 ¹ , 조사중 ¹	공동주택 공사부실 및 입주자대표회의 비위 관련 등
총 계	18		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5. 처리 결과 및 조치 성과

□ 처리 내역 ('18년 4분기)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 54		종결 153				조사중	취하
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 없음	증거 불충분	중복 종결	권한 없음		
260	6	48	73	57	12	11	32	21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(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)

□ 처분(조치)사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건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부패신고	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	자치구	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75,784원
2	부패신고	보조금 사업자 회계 부적정	본청	반납명령 8,772,130원
3	부패신고	보조금 사업자 사업운영 부적정(2곳)	본청	보조금 환수 (각 3,579천 원, 1,690천 원)
4	부패신고	위탁복지시설 시설장의 겸직 및 불공정 채용	자치구	행정처분 요구2 (위수탁협약 위반 등 행정처분)
5	공익신고	병원 내 부정의약품 사용	본청	수사의뢰 (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)
6	기타	등록변경 절차 없이 신문발행	본청	과태료 부과 (20,000천원)